

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법 제80조제3항”을 “법 제80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

제12조 중 “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”을 “제9조에 따른 수수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<b>제4조</b>(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)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,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(청소촉구서의 도착 일로부터 1개월 이내) 및 동 기한 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<b>법 제80조제3항에</b>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<b>제4조</b>(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b>법 제80조제4항에</b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b>제11조</b>(수수료의 가산금) <b>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b></p>	<p><b>제11조 &lt;삭제&gt;</b></p>
<p><b>제12조</b>(수수료의 강제징수) <b>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b></p>	<p><b>제12조</b>(수수료의 강제징수) <b>제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b></p>

## 참고

## 관계법령

### □ 하수도법 제41조(분뇨처리 의무)

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⇒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, 가산금에 대한 위임사항 없음

### □ 하수도법 제80조(과태료)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2.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·관리한 자 ⇒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·관리(정화조 청소)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